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장 애 인 · 노 인 · 임 산 부 등 의
편 의 증 진 보 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3 제1항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 신청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u><신 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87